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22. 7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일부개정(2022.2.3.개정 / 2022.8.11.시행)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, 이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를 일부개정하여 반영하고,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려고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등한 체육의 진흥 및 지원 조항 신설(안 제10조의5)

- 전문체육, 생활체육, 장애인체육을 위한 시책 마련 시 성, 연령, 장애유형, 지역특성 등 고려

나.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조항 신설(안 제10조의6)

- 평창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
(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, 사무실 운영경비 등)
- 체육회는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을 사전에 군수와 협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2.05.19. ~ 2022.06.0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일부 반영
- 5) 개인정보 사전검토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체육단체”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”를 “법 제5조”로 한다.

제3장 및 제4장을 각각 제4장 및 제5장으로 하고, 제10조의2 앞에 “제3장 체육진흥 및 체육단체 지원”을 삽입한다.

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을 각각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로 하고,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5(평등한 체육의 진흥 및 지원)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, 연령, 장애유형,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6(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)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.

1.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
2. 사무실 운영경비

3.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

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, 지급금액,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7(중전의 제10조의5) 제1항중 “제10조의4제2항”을 “제10조의4제2항, 제10조의6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6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“체육단체”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</p>
<p>제3조(설치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소속하에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설치) <u>법 제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3장 체육진흥 및 체육단체 지원</u></p>
<p>제10조의2 ~ 제10조의4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0조의2 ~ 제10조의4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의5(평등한 체육의 진흥 및 지원)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, 연령, 장애유형,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0조의6(체육회 운영비 지원</p>

등)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.

1.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 경비

2. 사무실 운영경비

3.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

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, 지급금액,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5(보고·검사) ① 군수는 제10조의2제2항, 제10조의3제2항,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0조의7(보고·검사) ① -----

-----제10조의4제2항, 제10조의6제1항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6 (생략)

제3장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

제11조 ~ 제17조 (생략)

제4장 보칙

제18조 ~ 제19조 (생략)

제10조의8 (현행 제10조의6과 같음)

제4장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

제11조 ~ 제17조 (현행과 같음)

제5장 보칙

제18조 ~ 제19조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국민체육진흥법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스포츠윤리센터,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<개정 2020. 2. 4., 2020. 12. 8.>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, 2022. 2. 3.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교육체육과장 김영옥
연락처	(033) 330 - 2020